

더 많아진 혜택으로, 하루하루 든든하게!

기본자격

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

나이

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

생활환경

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
*소득인정액이란?

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


*선정기준액

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

구분	2014년 7월 이전	2014년 7월 이후
단독	68만원	87만원
부부	108.8만원	139.2만원

중증장애인

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인 사람



근배로 인상된 기초급여액

$$\text{장애인연금} = \text{기초급여} + \text{부가급여}$$

기초급여

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

지급 대상 만 18~64세 이하 중증장애인 (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)

지급 금액 최대 월 20만원 (2014.7.1부터 시행)



*기초급여액 지급 감액

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,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부가급여

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에 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

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상위 초과자

지급 금액 대상 별 차등 지급



장애인연금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신청서 작성**
 -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 - 소득 재산 신고서
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본인 및 배우자)
 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 - 주택·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 (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)
-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**
 - 본인 신청 시
 - 신청자의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
 - 본인명의로 통장사본: 업무 방지를 위해 연금수급을 위한 별도 통장개설 권장
 - 대리 신청 시
 - 대리인의 신분증 /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
- 신청**
 -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- 심사**
 - 신청자의 자산조사 (시·군·구) 및 장애등급심사 (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)
- 결과통보**
 - 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
- 지급**
 - 매월 20일 연금 지급 (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

•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

- 이의신청**
- 대상: 장애인연금 자격, 장애등급 심사 결정 등
 - 기한: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 - 장소: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
결과통보 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